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2025. 5.

## 목 차

1. 해외금융계좌 신고 ..... 1
2. 해외가상계좌 신고 Q&A ..... 7

## 1.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의무자) 2024.12.31.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하 '내국인')\* 중 2024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이 5억원 초과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계좌잔액 전부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신고의무 있음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친족 및 임직원 소유 주식 포함)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 다만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간접 비율 계산은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 곱하여 계산, 국제조세제도과-284(19.7.3.))

\*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명의신탁) 지분율, 조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있음(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 <b>거주자</b>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li><li>-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li><li>-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li><li>·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li><li>·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 한 경우만 해당)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li></ul></li></ul>
* <b>내국법인</b>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b>해외금융계좌</b> : 은행업무, 증권(해외증권)거래, 파생상품거래,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 <b>해외금융회사등</b> : 국외 소재 금융회사등(금융·보험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예) 신한은행 LA지점 포함, HSBC 서울지점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질적 소유자</b> :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위험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 처분권한 가지는 등 사실상 관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국조령 94조 ③항)</li> <l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국에 설립된 집합 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 투자증개업자, 한국예탁결제원, 금전신탁 계약의 신탁업자, 벤처투자조합</li> </ul> </li> <li>* <b>재외국민</b>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li> </ul>
--

- (신고의무면제자) 2024.12.31.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4.1.1.~'24.12.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5.1.1.~2024.12.31.)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국제기관 종사자) 아래 어느 하나에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 해외금융계좌 보유하지 않은 자('24.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근무자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 받는자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 근무자로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 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신고의무자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화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채권추심회사(국조령95조⑤항)

- (신고대상계좌) 해외금융계좌 잔액(예·적금, 주식(예탁증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이 2024년 매월 말일(종료시각 현재)<sup>\*1</sup>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잔액이 최고인 월말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신고기준일에 보유한 계좌 신고

\*1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 아닌 각 국(지역) 현지 시간 기준임

- 계좌잔액이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신고대상 아니며, 신고기준금액 산정시 금융채무잔액은 차감하지 않음
- 해당연도 거래실적 없거나, 연도 중 해지된 계좌, 직전연도 신고내용과 변동 없어도 매월말 잔액합계가 5억원 초과시 신고
- (신고제외계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일정요건 갖춘 계좌(국조령 93조 ②항)

#### [신고의무 발생(5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단위 : 억 원)

월 계좌 \ 월	1/31	2/29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예금)	1	3	1	2	2	-	-	1	4	2	1	1
B계좌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1	-	1	-	1
D계좌(채권)	1	4	1	1	3	1	계좌해지					
잔액 계	4	8	3	4	7	3	2	2	4	4	3	3

☞ 위 사례의 경우 2024년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은 2/29일 8억원이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이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신고기준일인 2월말 보유하고 있는 A계좌, B계좌, D계좌

- (잔액 산정방법) 자산별로 매월 말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 후 합계
  - 예·적금 등 :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 상장주식, 상장채권 : 매월 말일 종료시각 수량 × 매월 말일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보험상품 :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납입금액
  - 집합투자증권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가상자산 : 매월 말일 종료시각 수량 × 매월 말일 최종가격\*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거래소의 폐업·해산·파산으로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확인 불가능한 경우나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을 보관만 해주는 지갑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25.2.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 매월 말일 종료시각 수량 × 시가(시가 산정 곤란시 취득가액)

- (신고기한) 2025년 6.1.~6.30.까지(2024년도 보유계좌정보)
- (제출방법) 국세청홈택스>>증명·등록·신청 >>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직접작성 및 파일변환 신고(국세청손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미(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전까지 가능
- (자금출처 소명요구) 신고기한까지 미(과소)신고시 과세당국은 위반금액에 대한 출처에 대해 소명요구 가능(수정신고, 기한후 신고시 소명요구 생략), 이 경우 계좌신고의무자는 90일이내 소명해야 함(부득이한 사유 (국조령97조③항)로 소명기간 연장 신청시 60일 범위내에서 연장승인 가능)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① (미·과소 신고) MIN(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 10억 원)

\* 2025.2.28. 이후 과태료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국제조세제도과-188, 2014.5.2.)

예) 신고기준일을 5.31일로 하여 8억원 신고하였으나, 12.31일 계좌잔액이 1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차이 5억원이 아니라 C계좌 미신고금액 6억원임

계좌	월	5/31	12/31	차이
A계좌		2	2	-
B계좌		6	5	-1
C계좌		-	6	+6
잔액 계		8	13	+5

\*2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후 신고 통해 단순 명의자 해외금융계좌정보 확인된 경우 과태료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부과(서면법규과-1053, 2014.10.6.)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서면법규과-56, 2014.1.21.)

② (미(거짓)소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147⑤) 없이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10%

\* 2025.2.28. 이후 과태료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③ ①과 ②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 아래 '과태료 감경 및 가중기준' 참고

④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한 경우 ①~③ 과태료 30%~90% 감경\*(단, 과세당국 과태료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 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이내 90%, 1년이내 70%, 2년이내 50%, 4년이내 30%

\*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이내 90%, 6개월이내 70%, 1년이내 50%, 2년이내 30%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관련법령) 국조법 52조~57조, 90조, 국조령 92조~97조, 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 국조법시행령 제93조 : 신고 제외대상 계좌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조법시행령 제147조 : 자금출처 미소명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사유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 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 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과태료 감경 및 가중기준]

유형	사유	내용	비율
기중 <sup>1)</sup>	상습적 위반 <sup>2)</sup> (위반횟수)	2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고의적 위반 (위반정도,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해외재산 불법반출·은닉 또는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0~50%
감경	조세회피의도 없는 단순 미신고 (위반동기, 결과)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등으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보유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명세에 해외 계좌가 포함된 경우 등	50%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국외 소득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 신고가 확인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	

	<p>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거래신고, 정상 회계처리(법인의 경우) 등으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p> <p>「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sup>3)</sup></p>	
계좌정보가 일부 확인되는 경우 (위반결과)	<p>공동명의자 등 관련인의 신고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일부가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되는 미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한하여 감경</p> <p>이전 연도에 기 신고된 계좌로 계좌번호, 개설은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p>	

- 1) 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는 가중 제외
- 2) 상습적 위반 가중은 위반행위 적발 횟수 기준으로 1회 적발 시 여러 연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회 적발로 봄
- 3) 2021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2.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Q&A

[첫페이지로 이동](#)

### [정의, 신고대상]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2.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FTX)의 계좌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3.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 **4.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들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 **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 **[잔액 산출 방법]**

##### **7.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1억 원이 적용됩니다.

##### **8.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9.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하여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사례)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 10.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습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바이낸스, “⑪계좌 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습니다.

## 11.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⑯기준일 잔액”에 7억을 적습니다.

## 12.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⑯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2022년 이전 보유분 신고여부]

**13.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6월 신고). 따라서,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을 미신고 한 경우라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